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7항에 제19호의2 및 제1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의2.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

19의3.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

별표 1 중 총계 “645”를 “64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544”를 “546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“184”를 “186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650”을 “65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549”를 “551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“184”를 “186”으로 한다.

별표 7 조직 1)의 평가기간란, 같은 표 조직 2)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조직 3)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10조(교육안전정보국) ① ~ ⑥ (생략) ⑦ 교육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9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10조(교육안전정보국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. 1. ~ 19. (현행과 같음) <u>19의2.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</u> <u>19의3.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</u> 20. (현행과 같음)
20. (생략)	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교육부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645</u>	<u>647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544</u>	<u>546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사서 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 관·임업사무관·기상사무관· 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 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 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 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	<u>184</u>	<u>186</u>	+2

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교육부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650</u>	<u>652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549</u>	<u>551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사서 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 관·임업사무관·기상사무관· 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 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 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 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	<u>184</u>	<u>186</u>	+2